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8 선고 2021가단504217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 고 1. B
2. 한국토지주택공사
변 론 종 결 2021. 8. 27.
판 결 선 고 2021. 10. 8.

주 문

1. 피고 B은,
가. 원고에게 45,918,296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6. 11.부터 2020. 7. 10.까지는 연 6% 의, 그 다음날부터 2021. 4. 30.까지는 연 7.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제1의 나.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,710,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 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 거

가. 피고 1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2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김미리

별지